

(2) 위 협약서 작성의 경위를 보아도 건설교통부 장관은 1999. 2. 2. 피고에게 보낸 공문을 통해 원고가 자금부족으로 보증채무의 변제를 지연함에 따라 피고가 보증채무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원고가 미변제금에 대해 연 25%의 높은 연체이율을 부담하게 될 입장에 처하게 된 데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면서 소송을 유보하고 변제시까지 연체료율이 아닌 약정이율을 적용하여 달라고 협조 요청을 하였는바, 피고는 당초 위 협조 요청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다가, 결국 건설교통부 장관의 중재로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과 관련하여 논의한 끝에 쟁점 조항이 포함된 위 협약서를 작성하기에 이른 것이다.

(3) 원고는 주식회사로 전환한 지 1개월 이내인 1999. 6. 24. 보증채무금을 지급하면서 ○○ 3 지구의 4회차 할부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 사건 보증계약에 정하여진 보증한도금액 전액을 지급하였는바, 확정된 보증채무액에 대하여 6%의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하자는 것이 위 협약서 작성 당시 원고의 의사였다면 위와 같은 금액을 지급할 이유가 없고, 심지어 10%의 약정 이율을 적용하여도 ○○ 2-1 지구의 경우 약 2,800만 원 (=실제 지급액 797,101,230원-확정된

보증채무액 734,316,634원×(원금 1+10%×173일÷365일)), ○○ 4 지구의 경우 약 3,000만 원 (=실제 지급액 920,156,280원-확정된 보증채무액 837,038,684×(원금 1+0.1×229일÷365일)) 정도를 초과 지급한 셈이 되어 그 계산의 근거를 설명할 길이 없으며, 오로지 18%의 이율을 적용하되 보증한도금액을 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할 경우에만 위와 같은 지급금액을 설명할 수 있다(○○ 3지구의 4회차 할부대금의 경우 보증한도액에 미달하는 1,197,063,840원만 지급하였으나, 위 할부대금은 당초 지급약정일이 1999. 4. 30.로서, 그 다음 날부터 연 18%의 이율을 적용하여 지급 금액을 계산하면 1,197,063,845원 (=확정 보증채무금액 1,165,452,930원×(원금 1+18%×토지할부대금의 지급약정일 다음 날인 1999. 5. 1.부터 보증금 지급일자인 같은 해 6. 24.까지 55일÷365일), 원 미만 버림)이 되어 실제 지급금액과 거의 일치하므로, ○○ 3지구 4회차 할부대금에 관한 지급금액은 이미 이익을 상실한 변제기의 약정이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착각한 나머지 이자의 기산점을 잘못 파악하여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).

(4) 원심은 원고가 이행할 보증채무의 확정